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자체 등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용 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하고 경작용 및 육림업 등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자체 매각대금 분납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지자체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시점이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납부 시였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납부한 경우로 완화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17조제2항)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장 연임기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임업용 재산의 사용료를 신설(안 제29조제1항제1호의3)

국유재산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율 1%를 적용하여 농·어업과 임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라.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9조제3항)

종전에는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기준으로 경작용 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이 포함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

마. 사용허가 갱신 시점의 사용료 조정 상한 적용 확대(안 제31조)

현재 농·어업·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폭 상한(5퍼센트)을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갱신 시 사용료 인상의 5% 상한을 적용함

바. 사용허가 갱신기간 중 사용료 산출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34조제3항 신설)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는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갱신기간 도중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 사용료율이 인하된 경우에도 직전연도 연간사용료로 인해 개정된 법령의 의도와 달리 기존 사용자는 사용료율 인하 적

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료가 아닌 신설·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수의매각 근거 중 운용사례가 없거나 내용이 유사한 조문 정비를 통해 수의매각 허용 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함

아. 국유 일반재산 처분 절차 개선(안 제52조제3항)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처분 시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재산의 규모·금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청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개정함

자.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안 제55조)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매수자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매수자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등 매수자의 국유재산 매입 부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5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55조제2항제1호의2”를 “제55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5조제3항제3호의2”를 “제55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업 총수입”을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작물수입”으로 한다.

1의3. 「입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제31조제1호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 최초로 갱신된 사

용허가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 중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용료율이 인하되는 경우, 인하된 이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연간 사용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각종”을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8호 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을 “제1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4호”를 “제3항제19호마목”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

나.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

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라.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

마. 정부출자기업체의 소속 근로자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

제4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를 “일반재산을”로, “미리”를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500만원”을 “일정 금액”으로,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년
2.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
 -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산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재산

제56조 중 “제55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55조제2항제2호”로, “제3항제3호·제5호”를 “제3항제1호·제3호·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고지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조정의 적용례) 제31조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매계약

을 체결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 ----- ----- ----- -----.
1. <u>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 호</u> 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 각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 <u>제55조제2항제2호</u> ----- ----- ----- --
1의2. <u>제55조제2항제1호의2</u> 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 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1의2. <u>제55조제3항제1호</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제55조제3항제3호의2</u> 에 해당 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3. <u>제55조제3항제4호</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u>1년으로 한다.</u>	② ----- <u>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1의2. (생략)

<신 설>

2. ~ 7. (생략)

② (생략)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
법) ① -----

법) ①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입업·산림 공익기능 증
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
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
상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

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
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
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
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
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 ⑨ (생략)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
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
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
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
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
위 면적당 농작물수입-----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료의 조정) -----

-----.

1. ----- 제1호의2,
제1호의3 -----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 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u>최 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 다</u>): 전년도 사용료보다 5 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생략)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② (생략) <u><신설></u>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2. ----- ----- 가. ----- ----- ----- ----- ----- <u>경 우 최초로 갱신된 사용허 가 기간으로 한정한다</u>--- ----- 나.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갱신된 사용허가 기간 중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사용료율이 인하되는 경우, 인하된 이후 최 초로 납부고지하는 연간 사용료 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제40조(처분의 방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
으로 한다.

1. ~ 5. (생략)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 10. (생략)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
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
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 17. (생략)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더목에 따른 한센병 환
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0. (현행과 같음)

11. ---- 인구 분산을 위한 정
착사업 등 각종 -----

12. ~ 17. (현행과 같음)

18. -----

--

<삭제>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를 매각하는 경우

<삭 제>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
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
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
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
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
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
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
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삭 제>

라. (생략)

가. (현행 라목과 같음)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삭 제>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시 외의 지역[군(광역시·도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
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
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
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
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
(상속인을 포함한다)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
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
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
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
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
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
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
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
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삭 제>

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
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
하는 경우

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
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
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
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
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
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 하. (생략)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
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삭 제>

나. ~ 아. (현행 아목부터 하
목까지와 같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지분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

나.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생략)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주 등 출자자

- 다.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라.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
- 마. 정부출자기업체의 소속 근로자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

<삭 제>

2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 28. (생략)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
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
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

<삭 제>

25. ~ 28.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⑤ 제3항제19호마목-----

권과 수익계약으로 취득할 지분
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
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
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⑥ (생략)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법 제43조제
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
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
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⑪ (생략)

제52조(매각) ① · ② (생략)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를 위임·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
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3조제
1항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1.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52조(매각)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일반재산을 -----

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의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 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 일정 금액-----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
---.

1.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년

2.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② -----

-----.

<삭제>

<삭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
는 경우

2. ~ 10. (생략)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 설>

1. ·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

2. ~ 10. (현행과 같음)

③ -----

-----.

1.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하려는 재산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하려는 재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지의 구성에 필요한 재산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구성에 필요한
재산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삭 제>

<u>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구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u>	
<u>3의2. · 4. (생략)</u>	4. · 5. (현행 제3호의2 및 제4호와 같음)
<u>5.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구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u>	<u><삭제></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u>제55조제2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u>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 ----- ----- <u>제55조제2항제2호</u> ----- ----- <u>제3항제1호 · 제3호 · 제5호</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152